

제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87 호
의결년월일	2005. 3. . (제 14 회)

제출일자	2005. 3. .
제출자	계룡시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3호)에 따른 여유기구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방재기구 설치지침 등으로 인해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총정원 및 직급별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市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4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256인으로 함(안 제2조).

<정원증원 현황>

직종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	2	3	5	3	1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신설하고, 본청·면동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신설).

3. 참고자료

① 행정기구 및 인력보강지침(행자부)관련 승인기구 및 정원내역

구분		담당명	승인정원(일반직)				비고
			계	5급	6급	7급이하	
계			14	2	3	9	
기구 신설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	5	1	1	3	
		재난관리	4		1	3	
		복구지원					6급이하 자체정원 활용
	여유기구		1	1			"
	공무원단체		3		1	2	총무과 소속
인력보강		-	1			1	수의직 (8급)

<14명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 내역>

가. 직종별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지 도	기능직	별정직
종 전	242	1	188	6	45	2
조 정	256	1	202	6	45	2
증 감	+14	0	+14	0	0	0

※ 직종별 비율 : 일반·지도직 78%이상, 기능직 20%이내, 정무·별정2%이내

나. 일반직 직급별

구 분	계	4~5급이상 (1%이내)	5급 (7%이내)	6급 (24%이내)	7급 (32%이내)	8급 (24%이내)	9급 (12%이상)
종 전	188명	3	12	45	60	45	23
조 정	202명	3	14	48	65	48	24
증 감	+14	0	+2	+3	+5	+3	+1

② 전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행정자치부)

가. 재난방재 및 여유기구 설치

-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조직권 강화

※ 관련규정 : 지난 2004. 12. 18일(대통령령 제18603호)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재난방재기구>

담 당 명	계	정 원(권고안)	비 고
계	13		
재난안전관리과장	1	5급1	정원승인
민방위담당	4	6급1, 7급이하3	"
재난관리담당	4	6급1, 7급이하3	"
복구지원담당	4	6급1, 7급이하3	자체정원활용

〈여유기구〉

○ 여유기구제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 인정(여유기구의 설치·폐지·전환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 설치 및 운영기준

- 상시적 업무처리기구설치 불가 :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만 설치
- 여유기구의 상시기구화 금지 : 여유기구 목적 달성시 자율적 폐지 또는 타 목적 전환 등 탄력적 운영

○ 규 모 : 과단위 기구

- 기구명칭 : 당면사업추진단(단장 : 5급 1명)
- 6급이하 정원은 자체정원 범위내에서 활용
- 정원의 직렬은 자율 책정

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기구명(표준안) : 공무원단체담당(총무과 소속)

○ 정 원 : 일반직 3명(6급1, 7급이하 2)

○ 담당업무(기능)

-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
- 공무원노조 출범 및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 준비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 공무원연수·교육·홍보계획 수립 등

다.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인력 보강

○ 정 원 : 수의직 또는 가축위생 연구직(8급상당, 1명)

○ 주요 담당업무 : 가축질병 방역

4. 임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기간 : 2005. 2. 23. ~ 3. 14 (20일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정원의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정원책정기준)

○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42”를 “256”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231”을 “245”으로 한다.

제3조중 제목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 내용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표1과 같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제3조와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직속기관	면·동
총 계	256	186	11	28	31
정 무 직	1	1			
일 반 직	202	154	6	18	24
4급	1	1			
4급~5급	2	1		1	
5급	14	9	2		3
6급	48	38	1	3	6
7급	65	50	2	7	6
8급	48	36	1	5	6
9급	24	19		2	3
별 정 직	2	1		1	
6급상당	1	1			
8급상당	1			1	
지 도 직	6			6	
기 능 직	45	30	5	3	7
6급	1	1			
7급	4	2	1		1
8급	7	5	2		
9급	14	13		1	
10급	19	9	2	2	6

관 련 법 령(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8조제2항관련)

1. 일반직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도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특 별 시	4% 이내	14% 이내	33% 이내	34% 이내	15% 이상
광 역 시	4% 이내	14% 이내	31% 이내	34% 이내	17% 이상
도	5% 이내	20% 이내	33% 이내	34% 이내	8% 이상

나. 시·군·자치구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24% 이내	12% 이상
군	1% 이내	6% 이내	27% 이내	31% 이내	24% 이내	11% 이상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9% 이내	29% 이내	31% 이내	13% 이상

비고

1.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 7급을 30% 이내로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특 별 시	6% 이내	8% 이내	20% 이내	30% 이내	36% 이상
광 역 시	4%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40% 이상
도	4% 이내	9% 이내	15% 이내	32% 이내	40% 이상
시	3% 이내	9%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군	3% 이내	9% 이내	16% 이내	32% 이내	40% 이상
자 치 구	3% 이내	6% 이내	14% 이내	32% 이내	45% 이상

비고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특별시	16% 이내	84% 이상	5% 이내	95% 이내
광역시	16% 이내	84% 이상	5% 이내	95% 이내
도	15% 이내	85% 이상	26% 이내	74% 이내
시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내
군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자치구는 군에 준하여 책정하되,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특별시	1% 이내	2% 이내	4% 이내	5%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광역시	1% 이내	3% 이내	4% 이내	5% 이내	15% 이내	32% 이내	40% 이상
도	1% 이내	2% 이내	3% 이내	6% 이내	15% 이내	33% 이내	40% 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이 상 상	5급 상 당	6급 상 당	7급 상 당	8급 상 당	9급 상 당
특 별 시	6% 이내	6% 이내	21% 이내	41% 이내	24% 이내	2% 이상
광 역 시	9% 이내	11% 이내	21%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도	15% 이내	14% 이내	25% 이내	32% 이내	12% 이내	2% 이상
시		7% 이내	34% 이내	39% 이내	18% 이내	2% 이상
군		7% 이내	50% 이내	29% 이내	12% 이내	2% 이상
자 치 구		7% 이내	19% 이내	48% 이내	24% 이내	2% 이상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참 고 자 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42</u>인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231</u>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규칙</u>으로 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256</u>인으로 하고, 이를 다음각호와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245</u>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u>별표1</u>과 같고, 직렬별 정원은 <u>규칙</u>으로 정한다.